

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'97. 7. 14.
시민보건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7. 6. 20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'97. 6. 25.

다. 상정일자 : 제46회 임시회 제7차위원회('97. 7. 14.)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원배 보건행정과장)

가. 제 안 이 유

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(1995. 12. 29 법률 제5101호) 시행됨에 따라 보건소수가조례중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함.

나. 주 요 골 자

"보건소법"을 "지역보건법"으로 정비함. (안 제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김건재 전문위원)

○ 동 조례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(1995. 12. 29 법률 제5101호)으로 개정됨에 따라 안 제1조중 "보건소법 제8조"를 "지역보건법 제14조"로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.

○ 조례 제3조제1항에서 수수료 면제자중 "의료부조대상자"는 의료보호법시행규칙(1993. 12. 31 보건사회부령 제923호) 제3조가 개정됨에 따라 삭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 의 및 답 변 요 지

○ 질의요지(김유현 위원) : '95년 12월 29일 지역보건법이 개정되었는데 작년엔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이유는?

○ 답변요지(김원배 보건행정과장) : 지역보건법시행규칙의 개정이 늦어졌기 때문임.

5. 토 론 요 지 :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

6. 수 정 안 요 지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한대운 위원 외 1인

나. 수정이유

의료보호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"의료부조자"가 삭제됨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
시키기 위하여 수정함.

다. 수정 주요 골자

수수료 면제자중 "의료부조자"를 삭제함. (제3조제1항)

7. 심 사 결 과 : 수정안 가결.

8. 소 수 의 건 의 요 지 : 없 음

9. 기 타 사 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(안)에대한수정(안)

의안 번호	199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1997. 7. 14.

제안자 : 시민보건위원장

1. 수정이유

의료보호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"의료부조자"가 삭제됨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수정함.

2. 수정주요골자

수수료 면제자중 "의료부조자"를 삭제함. (제3조제1항)

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(안)에대한수정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(안)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3조제1항중 "1종보호대상자·2종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"를 "1종보호대상자
및 2종보호대상자"로 한다.

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91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1997. 6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(1995.12.29 법률 제5101호) 시행됨에 따라 보건소수가조례중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“보건소법”을 “지역보건법”으로 정비 함 (안 제1조)

3. 개정근거

지역보건법(1995.12.29 법률 제5101호)

4. 조례(안) : 별첨

5. 예산수반여부 : 해당없음.

- 첨부 1.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(안)
2.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 조 중 “보건소법 제8조”를 “지역보건법 제14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서울시 마포구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<u>보건소법 제8조</u>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 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지역보건법 제14조</u> ----- ----- -----</p>